

수상위원회 구성 시행 세칙

2014년 11월 06일 제정

2024년 01월 18일 개정

제 1 조 (목적) 한국전기화학회상의 심사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별도의 수상위원회를 둔다.

제 2 조 (구성) 수상 위원회는, 회장이 지명한 1 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수상위원으로 구성한다. 수상위원은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회장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단, 수상위원회 위원이 학회상 후보자일 경우, 해당 위원은 배제한다.

제 3 조 (임기) 수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원 임기와 동일하다.

제 4 조 (업무) 수상 위원회는 한국전기화학회의 모든 학회상의 공고, 심사, 수상자 선정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(대)공로상, 우수 논문상, 우수 포스터 상은 별도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.

제 5 조 (위원회 소집 및 의사 결정)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한다. 수상 대상자의 선정을 포함한 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의결한다. 불참위원의 대리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수상자 선정) 수상 위원회는 각 상의 세부 규정에 따라 제출 서류 등을 심사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.

제 7 조 (가점 및 감점) 수상위원회는, 각 상의 특성에 따라 수상 후보자의 학회 발전 공헌도를 감안하여 평가 총점의 10% 내에서 감점 또는 가점할 수 있다. 감점과 가점의 판단 근거는 학회 정회원 자격 유지 기간 및 학회 영문지 (JECST) 포함 한국전기화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 편수 및 학회 봉사 경험 등을 포함한다. 또한 전기화학회 학술지 투고 실적 및 학회 봉사 경험이 현저히 낮을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. 단, 감점과 가점의 부여 및 후보자 배제는 제 5조의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다.

부칙.

본 규정은 201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4년 0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